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1. 23 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0(수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(2006.12.30) 및 2007년 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 등, 개별법령의 제·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(안 제32조)
 - 표준감면율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재정 보호

⇒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

⇒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

-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(안 제40조)
 -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
 -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
 - ⇒ 「건축법」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

-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(안 제64조)
 -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보상금 한도를 3,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
 - ⇒ 필지별 300 ~ 600만원 한도(재산가액의 5 ~ 10% 기준)
- 기타 개정사항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- ⇒ 지하·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
 - ⇒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- 가. 본 조례안은 2006.12.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제29조의 공유재산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 부료 산정요령을 삭제하고
 - 제32조 제2항을 신설 「공공이전 지방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례법」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표준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,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,
 -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조항은 "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"를 "영 제42조의 규정인 잡종재산 매각에 의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"로 하고
 - 제40조 제1항 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1,000㎡이하의 조항을 삭제하고, 동항 제4호중 "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)"를 "(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)"로 하며, 매각시 잔여부지가 「건축법」규정에 의

- 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을 시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하며,
-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최고액 "1,000만원"을 "3,000만원"으로, 동조 1호의 "200만원"을 "600만원"으로, 동조 2호"10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각각 증액 하는 내용으로.

다. 결과적으로

-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,
- 개별법령의 제·개정에 적합하고,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